

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2023년 9월 14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9월 5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9월 5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3년 9월 14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건강증진과장 최윤경)

- 가. 제안이유
 - 상위법인 「지역보건법」이 2023. 3. 28.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-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(안 제1조부터 제3조, 별표)

3. 관계법령

- 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상위법 「지역보건법」이 2023. 3. 28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